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18 업무방해
피 고 인 최용석 (*****-*****), 무직
주거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 *-***호
등록기준지 구리시 수택동 ***
검 사 김**(기소), 이**, 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경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 지**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지에 있는 철제구조물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그 안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트랙터 등 농기계가 통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철제 구조물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는 자기 소유·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국가 소유의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 도로를 복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로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 아닌 토지에 장애물을 쌓아둠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 798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등 참조).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 543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 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02. 3. 27.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 전 938㎡ (이후 위 토지로부터 같은 리 ***-* 전 37㎡가 분할되었다)와 인접한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 전 4,235㎡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2012. 7. 20. 위 추곡 리 *** 토지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가 분할되었고(분할 후 위 추곡리 *** 토지를 이 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 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경 이 사건 도로 부지 등에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 였으며,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직접 또는 토지임차인을 통하여 토마토 등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 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개설한 이 사건 도 로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00.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행료 및 통행 여부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21. 4.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있는 철제구조물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도로 이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개설하여 원고에게 그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일 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로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접 주민들에 대한 통행로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이 그 토지를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계약 등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 것은 자기 소유,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 소유 토지의 동쪽과 북쪽 방면으로는 국가 소유의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236 도로 1,359㎡가 인접하고 있어 위 국유지에 대한 복구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의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 트랙터 등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의 조성이 가능하고, 인근 토지소유자 변정식과의 협의를 통하여서도 피해자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까지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공로로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로의 통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토마토

등 경작 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상 _____